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인

2026년 9월 17일

1. 제안이유

의원 신분증의 규격·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분증의 규격·양식 등(안 제3조)

나.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(안 제5조)

다. 의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(안 부칙 제2조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·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신분증의 규격·양식 등)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에는 발급번호,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규격·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

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.

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
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분증의 반납 등) ① 의원은 그 신분증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의원신분증의 규격·양식 및 기재사항(제3조 관련)



1.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.

- ① 성북구의회 마크
- ② 사 진 : 26mm × 33mm
- ③ 한글성명 : 홍길동
- ④ 영문성명 : Hong Gil-Dong
- ⑤ 자치구의회명(성북구의회)
- ⑥ 발급번호
- ⑦ 의원증 제목
- ⑧ 성명

- ⑨ 생년월일
- ⑩ 임기
- ⑪ 증명내용
- ⑫ 발급기관장명의(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장)
- ⑬ 발급기관장직인
- ⑭ 소재지 안내
- ⑮ 성북구의회 마크
- ⑯ 의회 휘장 배경바탕

2.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.

3. 색도는 다음과 같다.

가. 파랑색 : C(100), M(60)

나. 회 색 : C(20), M(7), Y(7)

다. 의회휘장 배경바탕 : C(19), M(18), Y(31)

※ ()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.

4. 인쇄사양은 옅색 및 실크인쇄로 한다.

5.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의원신분증발급대장

[illegible]

의원신분증 재발급 신청서

1. 성 명(영문) :

2. 생년월일(성별) : (남/여)

3. 재발급 신청사유 :

4. 변 경 사 항 :

※ 기재사항 변경 시 작성

첨부 : 사진 2매(3.5cm × 4.5cm)

위와 같이 의원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장 귀하